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<u>100%이하로</u> 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<u>90%이상으로</u> 한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<u>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</u>”(Cp클래스, Cp-E클래스, S-P클래스의 경우에는 “연금지축계좌설정약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	<p>제51조(수익증권의 통장거래)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“<u>수익증권저축약관</u>”(Cp클래스, Cp-E클래스, S-P클래스의 경우에는 “연금지축계좌설정약관”)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.</p>
<p><신설></p>	<p><u>부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</p>